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75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김재원·권향엽·김준형

박은정・황운하・서왕진

백선희 • 위성곤 • 윤종오

이기헌 · 정태호 · 신장식

차규근 • 전종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계로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이 온라인 중심의 스포츠 관람권 예매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관람권을 배정함으로써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 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3(스포츠관람권의 접근성 제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를 관람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이하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관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스포츠관람권 배정(현 장 판매 수량을 포함한다)
 - 2.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에 대한 스포츠관람권 할인 등 우대
 - 3. 그 밖에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3(스포츠관람권의 접근성 제고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를 관람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이하 "스포츠관람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스포츠관람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스포츠관람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한다. 1. 스포츠관람취약계층에 대한일정 비율의 스포츠관람권 배정(현장 판매수량을 포함한다) 2. 스포츠관람취약계층에 대한스포츠관람권할인 등 우대3. 그밖에 스포츠관람계후계

<u>하여</u>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츠관람권 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 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 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적·기술 적 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 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 한다.

<u>제18조의3(</u>장애인의 스포츠관람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생략)

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관람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현 행 제18조의3과 같음)